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에 영업자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포함〉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45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에 영업자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포함	2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04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17.
- (3) 회 부 일 : 2025. 9.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에 영업자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에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함)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② (생략)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7의2. (생략) <u><신설></u> 8. (생략)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의2. (현행과 같음) 8. <u>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u> 9. (현행 제8호와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9조¹⁾에서는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장금 부과 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도록 하며,

1)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함)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진흥기금의 사업 범위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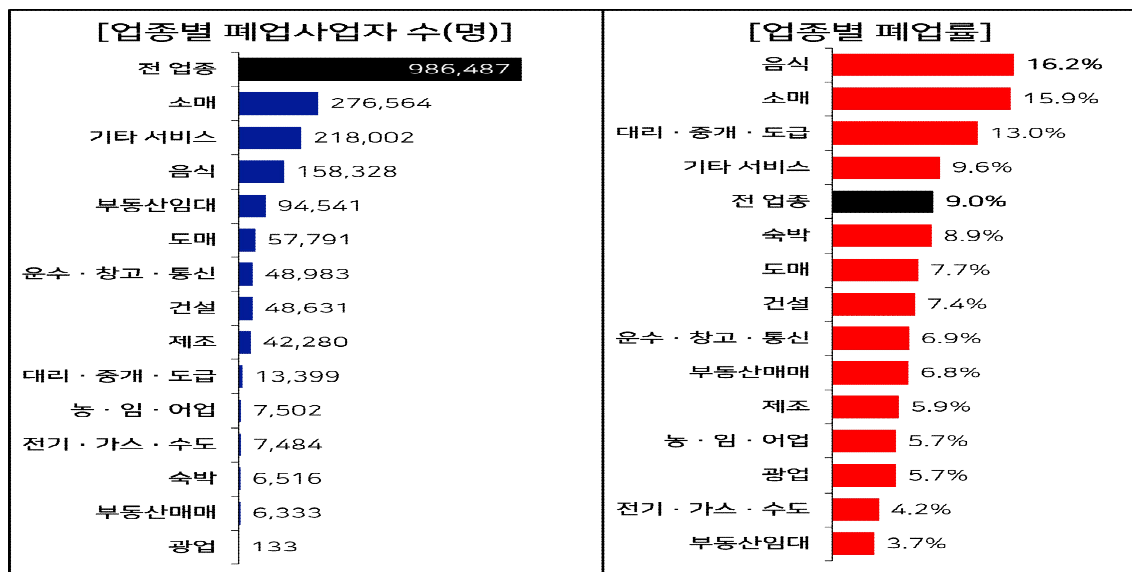
□ 즉, 현행법상 식품진흥기금의 용자 사업은 영업자의 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에 영업자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용자 사업을 포함하여,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12월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2006년 통

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98만 6,000명에 달하였고, 이 중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을 들은 사업자가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음식업(16.2%)과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다수인 업종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업종별 폐업사업자 및 폐업률 현황(2023년) >



자료: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한국경영자총협회)

-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업 범위에 영업자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을 포함하여 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

식품위생 관련 교육·홍보,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음식문화의 개선 등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융자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²⁾,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기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다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25.10월), 기금 목적 부합 여부 및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114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의견을,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중 검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59개 지방자치단체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밖의 20개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 2024년 말 기준 시·도별(시·군·구 포함) 식품진흥기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 총 보유액은 2,878억원으로, 이 중 서울이 8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9억원으로 가장 적었음.

-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5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가 약 8억원으로 가장 적었음. 기초지방자치

2) [참고 1]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약 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성군이 10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³⁾

< 시·도별(시·군·구 포함) 식품진흥기금 보유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식품진 흥기금	801	187	110	142	46	77	51	19	31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98	181	38	139	115	257	248	54	2,87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셋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전통 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3) [참고 2] 시·도 및 시·군·구 식품진흥기금 보유 현황(2024년말 기준)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 한편, 법체계와 관련하여 안 제89조제3항제8호에서는 “영업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현행법	개정안	수정의견(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1. (현행과 같음)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 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7의2. (생략) <u><신설></u>	2.~7의2. (현행과 같음) 8.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2.~7의2. (현행과 같음) 8. 영업자 의 업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 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금 운용의 주체인 시·도와 시·군·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의견 일부 발췌)

- 전북특별자치도: 경기침체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식품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전주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인천광역시 :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시설개선자금 용자사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행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광주광역시 : 영업 운영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금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며,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중복 가능성이 있음.
- 대구광역시: 사업운영 시 운영자금의 용자는 영업자의 경영난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각종 규제 완화로 과징금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로 운영자금 용자를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구 동구·남구·수성구·달성구·달성군·군위군: 기존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중립적인 입장임.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유사한 지원사업은 모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치중되어 매출이 영세한 업소(단란주점)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업종을 명시하거나 매출액 기준 일정 이하의 업소에 대한 지원임을 명확히 하는게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1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 최근 4년간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 수입 현황

(단위: 억원)

수 입	2021	2022	2023	2024
합 계	474	620	483	477
출연금	1	0	-	-
과징금	120	121	169	159
기금운용 수익금	45	62	90	96
기타*	308	436	225	222

* 융자금 상환액, 예치금 회수 등 포함

○ 지출 현황

(단위: 억원)

지 출	2021	2022	2023	2024
합계	480	631	579	462
융자사업	109	292	172	168
교육홍보	47	41	42	44
조사연구	5	4	8	11
포상금	0	0	1	0
교육기관 지원	12	16	16	15
음식문화 개선	118	100	100	96
위생등급 지정	9	10	16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65	55	61	60
기타*	114	113	164	50

* 그 밖의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

□ 최근 2년간 시·도별(시·군·구 포함)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 '23년 대비 '24년 각 시·도별로 수입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단위: 억원)

지 역	2023		2024		증감현황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합계	483	579	477	462	△6	△117
서울	87	80	113	66	26	△14
부산	55	60	23	30	△32	△30
대구	11	14	9	12	△2	△2
인천	24	23	20	21	△4	△2
광주	5	11	5	12	0	1
대전	18	15	11	9	△7	△6
울산	10	8	13	8	3	0
세종	1	1	2	1	1	0
경기	117	190	178	200	61	10
강원	8	9	9	8	1	△1
충북	12	12	15	10	3	△2
충남	76	71	9	11	△67	△60
전북	9	16	9	10	0	△6
전남	12	11	9	12	△3	1
경북	14	16	14	14	0	△2
경남	18	38	34	34	16	△4
제주	6	4	4	7	△2	3

※ 억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참고2 시·도 및 시·군·구 식품진흥기금 보유 현황(2024년말 기준)

○ 17개 시·도별 식품진흥기금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보유액	구 분	보유액
서울	56,710	강원	5,718
부산	14,504	충북	11,862
대구	9,882	충남	773
인천	5,436	전북	9,140
광주	3,050	전남	7,478
대전	4,833	경북	20,235
울산	5,096	경남	22,268
세종	1,884	제주	5,392
경기	13,454		

○ 226개 시·군·구별 식품진흥기금 보유 현황

－ 서울(25개)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종로구	1,187	성북구	795	양천구	691	서초구	1,470
중구	1,782	강북구	598	강서구	1,029	강남구	1,185
용산구	998	도봉구	695	구로구	1,193	송파구	605
성동구	349	노원구	536	금천구	845	강동구	959
광진구	888	은평구	348	영등포구	492		
동대문구	1,003	서대문구	830	동작구	834		
중랑구	918	마포구	2,656	관악구	552		

－ 부산((16)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진구	528	해운대구	284	강서구	213	동래구	166
수영구	490	동구	284	영도구	212	연제구	154
사상구	414	남구	273	기장군	200	북구	107
사하구	224	중구	233	서구	178	금정구	177

– 대구(9)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중구	159	남구	151	달서구	153
동구	58	북구	160	달성군	87
서구	155	수성구	64	군위군	132

– 인천(10)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중구	474	연수구	1,509	계양구	1,186	옹진군	131
동구	268	남동구	1,538	서구	1,491		
미추홀구	757	부평구	1,273	강화군	120		

– 광주(5)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서구	356	북구	315	동구	187
광산구	351	남구	305		

– 대전(5)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서구	838	중구	468	대덕구	375
유성구	791	동구	431		

– 울산(5)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남구	970	동구	368	북구	322
울주군	410	중구	322		

– 경기(31)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의왕시	105	김포시	791	안성시	400	양주시	84
하남시	89	평택시	745	의정부시	373	양평군	61
성남시	2,669	남양주시	688	구리시	359	연천군	21
고양시	1,670	광명시	611	포천시	275	과천시	17
수원시	1,435	안산시	595	이천시	233		
화성시	1,220	오산시	584	동두천시	156		
안양시	1,079	광주시	553	군포시	152		
시흥시	916	파주시	520	가평군	130		
용인시	835	부천시	507	여주시	127		

－ 강원(18)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원주시	571	춘천시	258	강릉시	208	정선군	125
동해시	557	삼척시	258	양양군	180	횡성군	122
영월군	375	철원군	242	태백시	164	평창군	116
고성군	104	속초시	227	인제군	158		
화천군	74	홍천군	219	양구군	133		

－ 충북(11)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음성군	661	증평군	216	단양군	114
제천시	459	보은군	207	청주시	2,866
진천군	435	옥천군	200	충주시	688
괴산군	229	영동군	193		

－ 충남(15)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천안시	344	부여군	115	보령시	26
금산군	327	계룡시	84	홍성군	1
예산군	299	청양군	82	아산시	456
당진시	243	서산시	79	논산시	442
공주시	116	서천군	35	태안군	367

－ 전북(14)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전주시	1,395	군산시	504	부안군	234	임실군	127
익산시	755	김제시	326	완주군	214	무주군	125
장수군	123	정읍시	281	고창군	189		
순창군	111	남원시	237	진안군	157		

－ 전남(22)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영암군	649	광양시	323	나주시	119	영광군	80
목포시	603	여수시	187	함평군	116	구례군	70
순천시	396	해남군	148	완도군	111	진도군	65
강진군	355	보성군	147	신안군	105	장흥군	52
담양군	44	화순군	134	고흥군	97		
곡성군	42	무안군	131	장성군	88		

－ 경북(22)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포항시	1,012	영주시	347	영천시	197	청도군	125
구미시	551	경산시	283	영덕군	178	영양군	122
안동시	401	경주시	264	성주군	160	예천군	115
김천시	374	칠곡군	233	고령군	159	의성군	108
봉화군	102	상주시	215	울진군	134		
울릉군	66	문경시	206	청송군	125		

－ 경남(18)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김해시	978	창녕군	196	남해군	73	함안군	34
거제시	274	양산시	159	하동군	72	통영시	26
창원시	251	거창군	132	진주시	56	의령군	22
함양군	20	합천군	80	밀양시	49		
고성군	16	사천시	76	산청군	39		